

2025년도 자체평가계획

2025. 9.

법 제 처

I. 개 요

□ '25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안)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선정 · 평가
 - 새정부의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성과 견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과제 선정
 - '24년 19개에서 일부과제 통합 · 변경을 통한 '25년 15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의 효율성 도모
-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정책성과 부분의 비율을 60%로 설정
 - 국정과제, 역점정책과제, 국정원칙, 지표의 적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과달성도 및 정책효과 평가
 -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단계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수렴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
-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 · 객관성 제고

□ 수립 경과

- 2025년 법제처 자체평가계획 초안 마련(3. 8.)
-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자문 등 사전검토 실시(3. 11. ~ 3. 20.)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 심의(3. 21.)
- 2025년 법제처 자체평가계획(안) 마련, 국조실 제출(~4. 4.)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분야	경력	비고
내부	최영찬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성과관리총괄		
	김진	법제정책국	국장	법제정책총괄		
	양미향	법제지원국	국장	법제지원총괄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실	정책관	법제조정총괄		
외부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	위원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법경제학	국토교통부장관 자문관 등	
	김주인	김주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김해영	법무법인 우먼	변호사	법학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김현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서울시 조직개편 자문단 자문위원 등	
	김혜영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정보화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등	
	박원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정보화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등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행정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 조정위원 등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	팀장	법학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선임 연구위원	성과관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등	
	이효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회 위원 등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법조인	기타	소계	
7명 (50.0%)	4명 (28.6%)	2명 (14.3%)	1명 (7.1%)	14명 100%	
					4명

* 기타: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 (법적근거)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법제처 훈령 제482호)
- (주요 심의사항) ① 자체평가계획, ②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 ③ 자체평가결과, ④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 ⑤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구성)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 운영 방법
 - (전체회의)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필요시)
 - (소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 분야별 소위를 구성,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자문 실시 후 전체회의 제출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주요정책 1소위	주요정책 분야 일부	최승필	김주인, 박재희, 박현정, 백경희, 이광희 기획조정관, 법제지원국장
주요정책 2소위	주요정책 분야 일부	김해영	김정욱, 손현, 이효경, 장경원 법제정책국장, 법제조정정책관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조직, 인사, 정보화	기획조정관	김현준, 김혜영, 박원재, 이광희
재정사업 특별소위	재정사업	김혜영	김정욱, 박원재, 손현 기획조정관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자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오은하(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2
		이연지(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044-200-6543
		주경근(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44
	재정사업 자율평가	박예지(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47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원팀	1소위 관리과제 평가 지원	김진주(법제정책총괄과 서기관)	044-200-6562
		이선미(국정입법상황실 사무관)	044-200-6846
		손은주(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기관)	044-200-6803
		박예린(법제지원총괄과 사무관)	044-200-6833
		김도현(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044-200-6711
		강민정(법령정비과 사무관)	044-200-6577
		이소현(행정규칙심사정비팀 사무관)	044-200-6945
	2소위 관리과제 평가 지원	오정애(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서기관)	044-200-6741
		박진혜(자치법제지원과 서기관)	044-200-6753
		하선우(법령데이터혁신팀 서기관)	044-200-6784
		우승기(법제정보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783
		전병희(법령용어순화팀 사무관)	044-200-6855
		김혜영(법제교육과 서기관)	041-924-1702
		김수진(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826
		허지영(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827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원팀	행정 관리역량 평가 지원	송은희(운영지원과 사무관)	044-200-6522
		박예지(운영지원과 서기관)	044-200-6529
		이근호(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사무관)	044-200-6554
		윤성윤(법제정보담당관실 주무관)	044-200-6762
		하선우(법령데이터혁신팀 서기관)	044-200-6784

□ 평가지원팀의 운영

- (평가지원 총괄팀) 자체평가계획 수립,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환류 실적 확인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 (분과별 평가지원팀) 관리과제 이행실적 자체 점검 및 추진실적 작성 등 평가업무지원

Ⅲ. 자체평가 대상

□ 평가 대상 : 14개 과(팀), 15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법제정책 총괄과 (법제국)	1.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① 하위법령 제때마련율	100%	(제때마련된 하위법령 건수/제때마련 대상 하위법령 건수) × 100 * 제때마련일 30일 전까지 정부입법지원 센터에 접수하지 않은 법령 제외
		②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출의견 처리율	94.6%	연도별 월평균 의견처리율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법령안 건 수/입법예고 제출의견 전체 법령안 건수) × 100
국정입법 상황실	2.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 입법 총괄·관리	① 주요 정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보고 건수	28회	국정과제 및 민생·경제 등 주요 정책 법령의 입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추 진현황 점검결과, 관계 부처 협조사항 등을 차관회의 등 부처 간 협의체에 보고 한 횟수
법제조정 정책관	3. 의원발의 법률안 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① 발의 전 법률안 예비 검토 실적	739점	검토건당[i)기본 3점, ii)상담 1점] + 난이도·중요도·검토활용 여부를 반영 하여 최대 가점 6점 • 검토난이도: 제정·전부개정, 분량 등을 고려하여 상·중·하로 평가 • 법안중요도: 국정과제 또는 언론이슈 • 검토활용: 발의법안 반영
		② 발의된 법률안 검토 실적	1,536점	검토건당[i)기본 3점, ii)중요 쟁점 검토 보고 10점, iii)상담 1점] + 난이도·중요도·검토활용 여부를 반영 하여 최대 가점 6점 • 검토난이도: 제정·전부개정, 분량 등을 고려하여 상·중·하로 평가 • 법안중요도: 국정과제 또는 언론이슈 • 검토활용: 국회송부
		③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실적	637점	협의회 상정 안건당 [i)서면 3점, ii)대면 4점] + 난이도·중요도·조정 성사 여부 를 반영하여 최대 가점 7점 • 난이도: 본협의회 개최, 예비검토 • 중요도: 국정과제 또는 언론이슈 • 조정성사: 전부조정, 일부조정, 미조정
법제지원 총괄과	4. 속도감 있는 정책 입법을 위한 법제 지원	① 법령입안지원 실적	93.9점	(유선회신 건수) × 0.1 + (서면회신 건수) × 0.4 + (대면 상담 건수) × 0.4 + (원스톱 법제지원 건수) × 4
		② 법령입안지원 만족도	100%	법령입안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한 수/ 전체 응답 수) × 100

법령 해석국	5.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 법 집행 지원	① 적극해석 건수	62건	적극해석 유형별로 파악 1. 규제 등의 침익요건의 확대적용을 막은 사례 2. 허가 등의 수익요건의 축소해석을 막은 사례 3.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②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 청취 건수	56건	민원인이 해석요청한 안건 중 민원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위원회에 관계인으로 참여한 안건 수 및 현장간담회 건수
법령 정비과	6. 민생 안정과 공정 · 상생을 위한 법령 정비	① 민생 안정과 공정 · 상생 을 위한 법령 정비과제 확정 건수	165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과제 중 민생 안정과 공정 · 상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협의 후 정비과제 확정 건수
행정규칙 심사정비팀	7. 위법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① 규제 사전검토 대안 제시 율	46.5%	(대안 제시 건수/사전검토 의견 회신 건수) × 100
		② 행정규칙 개선과제 발굴 건수	144건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발굴 · 송부한 건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8. 미래 이슈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개선	① 신기술 · 신산업 관련 입법지원 건수	45건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및 행 정법령 정비안 마련 건수
		② 법제정책 조사 · 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 건수	12건	입법실태 및 중장기 법제개선 과제 조사 · 연구 건수 + 제안한 과제 중 추진하기로 확정된 과제 건수
자치법제 지원과	9. 자치입법권 보장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 역량 강화 지원	①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 정비과제 확정 건수	50건	법령정비 과제로 발굴한 사항 중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과제 확정 건수
		② 자치법규 의견제시 만족도	94%	만족도 조사에 ‘만족’ 이상으로 응답 한 사람 수/응답자 수) × 100
법령 데이터 혁신팀	10. AI 기반의 혁신적 국가법령정보서비 스 제공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89.0점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자수*가중치) 합의 평균/전체 응답자 수 < 문항내용 > ①업데이트의 신속성, ②검색의 신 속성, ③법령정보의 신뢰성, ④검 색의 안정성, ⑤법령정보 활용성. ⑥전체적인 만족도
		② 법령정보 공동활용기관 증가 수	170개	‘24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open.law.go.kr)을 통해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신규 기관 증가 수
법제정보 담당관	11. 생활법령 · 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만족도	88점	(설문조사 응답자 중 ‘매우 만족’ 및 ‘만족’ 응답 수/전체 응답자 수) × 100
		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일 평균 페이지 뷰 수	52.1만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연간 조회한 모든 페이지 뷰 수 / 365
법령용어 순화팀	12. 어려운 용어 · 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① 법령 및 약관 · 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 문장 정비안 마련 건수	647건	현행 법령, 표준 약관 · 표준 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한 건수
		② 법령정보로 제공될 그림 · 체계도 · 표 등 개발 완료 한 시각콘텐츠 건수	533건	어려운 법 조문의 내용을 그림 · 체계 도 · 표 등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건수
법제 교육과	13. 공무원 등의 법 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①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 수	85,540명	연간 법제교육 과정별 인원 수의 합계 (집합교육 수료 인원 수 +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 수)
		②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	93.5점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 점수의 합 / 전체 응답자 수

법제교류 협력담당관	14.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① 맞춤형 해외 법령 번역 제공 실적(총 한글 글자 수)	497만자	연간 법령 번역 결과물의 한글 글자 수 총합
법제교류 협력담당관, 법령데이터 혁신팀	15. 외국 기관과의 법제 교류·개발 협력 강화	① 외국법제기관과의 소통률	82.5%	해당 연도 소통*한 외국법제기관(정부 기관, 국제기관) 수 / 법제처와 MOU 등을 체결한 외국법제기관(정부기관, 국제 기관) 수 * 외국법제기관과 상호 협력을 논의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이 이루어진 실적

※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평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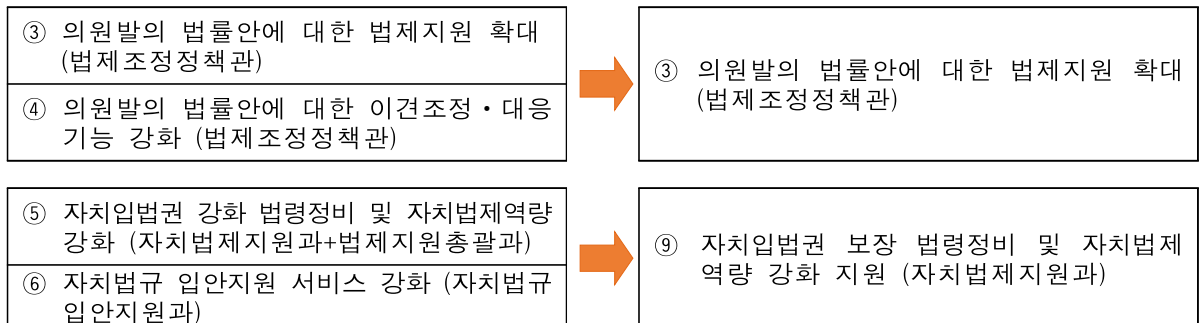
□ 주요 변경 사항

- (관리과제 수) '24년 대비 관리과제 4건 감소(19개 ⇨ 15개)
- (관리과제명) 새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관리과제명 수정
- (과제 신설) 부서(국정입법상황실) 신설에 따른 관리과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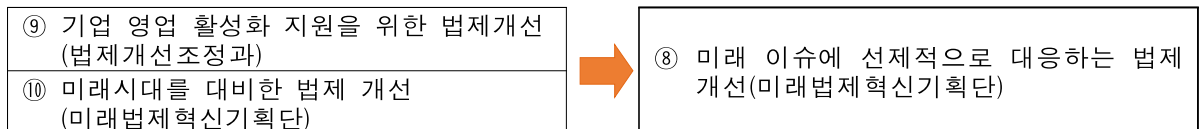
○ (과제 통합)

-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과제 통합(법제조정정책관, 자치법제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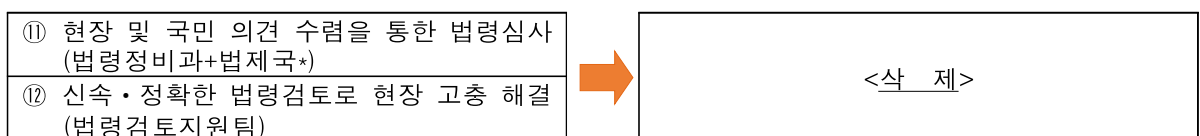


- 부서 변경·폐지*에 따른 과제 통합(미래법제혁신기획단)

* 법제개선조정과 ▶ 법제혁신지원과('25. 1.) ▶ 폐지('25. 8.)



○ (과제 삭제) 제도(국민참여심사 및 법령검토지원) 폐지에 따른 과제 삭제



* 법제국 해당 관리과제를 법제정책총괄과 과제(①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로 변경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정책형성 → 정책집행 → 정책성과 단계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생애주기에 따른 유기성 있는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정책형성 (22점)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10점)	정책목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구체성 및 적절성	5점
		정책수단의 적절성	5점
	분석·의견수렴 충실성(12점)	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의 충실성	6점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6점
정책집행 (18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4점)	추진일정의 구체성·적절성	2점
		추진일정 준수 여부	2점
	상황변화 대응성(6점)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의 적절성	6점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8점)	국민·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	8점
정책성과 (60점)	성과지표 달성도 (35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5점
		성과지표의 난이도	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20점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점)	정책효과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5점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	10점
가점 (+6점)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역점정책과제) 등에 대한 기여도	+4점
	핵심과제 추진성과	‘핵심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1점
	다부처 협업 노력	다부처 협업 과제 추진성과	+1점
감점 (△1점)	자료제출의 적시성	평가 자료 제출 기한 지연 시 (△0.1/일, 최대 △1점)	△1점

※ 상세 내용은 [붙임]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참조

○ 정책성과 및 효과 관련 항목의 배점을 60%로 설정

○ 적극성이 인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우대

-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①성과지표의 대표성 정성평가

- 결과지표 여부,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②**성과지표의 난이도** 정성평가('23년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①결과지표, ②부처 협업 필요성, ③현장 의견수렴 또는 방문형(현장형), ④다수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⑤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관장 활동 필요성 등

- '25년 목표치가 과거 3년 실적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전년도 실적의 110% 이상일 경우 ③**성과지표의 적극성** 인정, 담당 부서 의견수렴 및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표별 적극성 확정

* 실적이 증가 추세인 성과지표: 목표치가 3년간 평균치의 120% 이상이라도, 전년도 실적 이하인 경우 적극성 '상' 설정 불가('23년 자체평가위원 제도개선 의견)

* 전년도 목표달성 실패한 과제: 전년도 실적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 달성'으로 인정('25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 '성과지표 달성도' 관련 가감점 부여

-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적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가점(1점) 부여 가능
- 연말 성과지표 달성도가 200%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1점 이내) 가능
- 지표별 점수에 성과의 질에 따라 가감점(1점 이내) 가능
- 지표 특성상 초과달성(목표치의 120% 이상)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점(2점 이내) 가능

* (예) 하위법령 제때마련율('25년 목표치 100%)의 경우 달성 가능한 실적이 최대 100%로 초과달성 불가능

○ 정책성과 평가 시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기대효과 항목을 삭제 · 통합하고 종합효과를 평가

- 정책성과 평가 시 '24년도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 보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평가, 자체평가 결과 환류 및 실질적 자문 기능 강화

○ ‘핵심과제’ 선정 및 자체평가 시 우대

-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가점**(1점 이내) 부여

* (핵심과제) 1.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입법 총괄·관리
2.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 ‘24년 대비 ‘25년 자체평가 지표 개선 사항

구 분	‘24년	‘25년	비고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정책목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구체성 및 적절성(5점) 정책수단의 적절성(5점)	좌동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및 사례 분석 충실성(3점) 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충실성(3점)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충실성(6점)	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의 충실성(6점) 좌동	‘24년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지표 통합)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4점)	좌동	
상황변화 대응성	상황변화 대응성(6점)	좌동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8점)	좌동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35점)	좌동	
정책효과 발생 여부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점)	좌동	
가점 조정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3점) 핵심과제 추진성과(+1점) 협업과제 추진성과(+1점)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4점) 좌동 다부처 협업 노력(+1점)	지표 변경 (‘25년 정부업무 성과 관리 운영 지침 반영) 등
감점 신설	<신 설>	자료제출의 적시성 (최대 △1점)	지표 신설

- ① 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에는 관련 통계 및 사례 분석이 전제되기 때문에, 중복 지표를 통합(‘24년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② 새 정부 국정 원칙·철학 이행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 대해
가점 상향('24년) +3점 이내 → ('25년) +4점 이내]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경우 성과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력에 대한 보상(가점 상향) 필요('25년 자체평가위원 제도개선 의견)

③ 성과관리 사각지대인 다부처 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성과 가점 도입

* '25년 정부업무 성과 관리 운영지침 中 '25년 중점 추진 방향: 성과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부처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④ 불필요한 평가 지연 방지 및 부서 관심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시 감점 신설

V.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4명),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실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종합평가 실시
 - 행정관리역량·재정사업 부문은 인사, 조직, 정보화 및 재정 분야
담당 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특별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주요정책 1소위	주요정책 분야 (관리과제 1~7)	외부위원	외부(6), 내부(2)
주요정책 2소위	주요정책 분야 (관리과제 8~15)	외부위원	외부(5), 내부(2)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조직, 인사, 정보화	내부위원	외부(4), 내부(1)
재정사업 특별소위	재정사업	외부위원	외부(4), 내부(1)

□ 평가자료 검토방법

○ 부서별 관리과제 설명회 개최

- 주요정책 부문 평가대상 관리과제의 각 소관 부서에서 과제와 관련된 사업내용 및 2025년 성과 등을 간단하게 소개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심사 개최(서면)

- (주요정책)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자료 확인·점검 및 사전점수 부여
-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의 객관성·타당성을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에서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대면)

-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거쳐 주요 정책 부문 우수과제 및 미흡과제를 선정하고, 주요정책 부문·행정관리역량 부문 보완 필요사항 제시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 15개 관리과제를 7등급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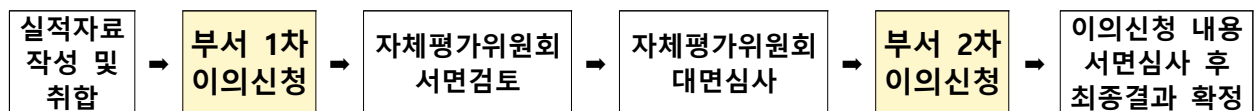
(매우우수 / 우수 / 다소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부진)

등급명	15개 관리과제(상위 누적 비율)
매우우수 / 1등급	1위(5%)
우수 / 2등급	2위, 3위(20%)
다소 우수 / 3등급	4위, 5위(35%)
보통 / 4등급	6위, 7위, 8위, 9위(65%)
다소 미흡 / 5등급	10위, 11위, 12위(80%)
미흡 / 6등급	13위, 14위(95%)
부진 / 7등급	15위(100%)

□ 국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 평가 대상 관리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 과제별 내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리과제 소관 부서 이의신청 절차 실시
 - (1차) 추진실적 취합 후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해서 예상 점수 범위에 대한 1차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평가의 적절성 및 형평성 제고
 - (2차) 자체평가위원회 대면심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오류 및 성과 제출 이후 발생한 객관적인 수치변경의 경우에 한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결정 및 최종결과 확정

<자체평가 절차>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자체평가 결과공개

- 평가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는 자체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등 확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	7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상반기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이행실적 점검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정	8월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및 해당 내용 반영하여 자체평가계획 수정
○ 부서별 사업설명회 개최	12월 초 (기획재정담당관실, 관리과제 소관 부서)	외부 자체평가위원 대상 관리과제 내용 및 성과 관련 보고
○ 자체평가 실시	'25년 12월 ~ '26년 1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공개	'26년 3월	정평위 보고 후 홈페이지 게재 및 국회 상임위 보고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 중심의 행정 구현

- 평가 결과를 조직 · 개인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개인 성과급에도 연계

2. 평가 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평가 결과 개선 ·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과제 담당부서별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예산부문) '25년 평가 결과를 고려, 예산 및 사업규모 등 조정
- (조직부문)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여 기능 재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인력 재배치 등 정원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3.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성과평가, 포상 등) 활용계획

- (성과평가와의 연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평가(BSC) 및 성과급과 연계
 - 부서장 및 부서원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개인평가 시 부서평가 실적 비율을 60%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리 유인 마련

< 법제처 BSC 계량평가 항목 >

4급 이상 (부서장) 및 5급 이하 (4·5급 포함)	성과지표 40%		자체평가 결과 60% (자체평가 결과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부서별 지표로 평가)
	공통지표 15%	부서별 지표 25%	

- (포상) 평가부문별 우수 실적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평가 담당자의 관심도 제고 및 동기부여 유인 제공
 - 주요정책 부문 우수과제 담당부서 및 전년도 대비 실적이 대폭 향상된 행정관리역량 부문 지표 담당부서 포상금 지급
- (제도적 인센티브) 직원 격려금 집행 대상 및 주요 직무급 선정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고려를 통해 관리과제 이행에 관한 조직 전체의 관심과 협력 유도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25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공유하고,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 시 개선·보완 사항 반영을 독려('26년 초)

평가지표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점)
측정 방법	○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정책목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구체성 및 적절성(5) - 관리과제의 정책목표가 ④ 전략목표·성과목표에 부합, ⑤ 정책수단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 ③ 정부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절 ① ④, ⑤, ③ 세 가지 모두 충족: 5점 ② ④, ⑤, ③ 중 두 가지 충족: 4점 ③ ④, ⑤, ③ 중 한 가지 이하 충족: 2점 ④ ④, ⑤,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책수단의 적절성(5) ④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 적절한 정책수단을 포함, 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③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실질적인 실행수단을 마련 ① ④, ⑤, ③ 세 가지 모두 충족: 5점 ② ④, ⑤, ③ 중 두 가지 충족: 4점 ③ ④, ⑤, ③ 중 한 가지 이하 충족: 2점 ④ ④, ⑤,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절성 여부 판단 - 관리과제의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여 상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 - 구체적인 정책목표 제시로 그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지 판단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인지 판단 ○ (정책수단 적절성) 실질적 정책수단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포함되었는지 판단(예를 들어 법률개정이 목표라면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강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이 적기에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2점)
측정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현황·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효과분석 등을 충실히 실시했는지 여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충실성(6)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현황 및 사례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정도 ① 매우 충실: 6점 / ② 충실: 4점 / ③ 보통: 2점 / ④ 부진: 0점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충실성(6) -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충실히 반영한 정도 ① 매우 충실: 6점 / ② 충실: 4점 / ③ 보통: 2점 / ④ 부진: 0점 * 의견수렴·협의 내용 반영사례가 실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매우 충실 이상 평가 가능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충실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관리과제 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SWOT 분석, PESTLE 분석,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PESTLE 분석: 정책대안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통계 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실적 작성 시 통계 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 및 출처 명시 필요 ○ (의견수렴 충실성)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의견수렴 또는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를 판단 * 의견수렴·협의 내용 반영사례가 실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매우 충실 이상 평가 가능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 (4점)
측정방법	○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추진일정에 ㉠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 추진일정이 충분히 적정한 수준(구체적,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① ㉠, ㉡ 모두 충족: 2점 ② ㉠, ㉡ 중 한 가지 충족: 1점 ③ ㉠, ㉡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음: 0점 ○ (추진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2) • 총 일정 대비 준수한 일정의 비율을 계산 ① 모든 일정 준수: 2점 ② 70% 이상 준수: 1점 ③ 70% 미만 준수: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추진일정의 적절성)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이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판단 ㉠ 의견수렴,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수행, 설문조사 등 필요한 일정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판단 ㉡ 세부 추진계획이 업무 절차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세부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에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의 충실성)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일정 준수 여부는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추진내용의 충실성 여부와 연계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일정 지연* 시 그 사유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일정 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변화(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팬데믹, 대북 관계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2. 상황변화 대응성 (6점)
측정방법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6) •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여건·상황변화 대처의 적시성, ㉢ 여건·상황변화 대처의 적절성 ①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6점 ②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4점 ③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4점 ④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2점 ⑤ ㉠, ㉡, ㉢ 모두 미이행: 0점 * 여건·상황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 판단 ① 충실히 수행: 6점, ② 일부 미흡: 4점, ③ 상당히 미흡: 0점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평가위원 재량으로 일정 점수 부여(4점 이내)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공공고객관리),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 포함 ㉡ 여건·상황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 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실, 당,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 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 여건·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정도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8점)
측정방법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실적 및 국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대상 현장방문, 세미나 개최, 자료제공, 홍보 등 소통 노력 정도 국민·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8) • ① 업무추진에 필수·상시적인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② 국민·관련기관과의 필수·상시적이지 않지만 수시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③ 국민·관련기관과의 협업실적 및 연계·협조체제 운영 ① ①,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8점 ② ①,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일부 내용 미흡: 6점 ③ ①,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 미흡: 5점 ④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5점 ⑤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일부 내용 미흡: 4점 ⑥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이행, 내용 미흡: 3점 ⑦ ①,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중 일부 미이행: 2점 ⑧ ①, ②, ③ 관련 필요 요소 모두 미이행: 0점 * 국민·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목표하는 정책성과를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창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협업체제를 실제로 구축하였는지 판단(예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 추진 등) ② 국민·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판단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세미나 등 회의체 상설화, 실제 회의 개최 여부, 지속적인 홍보 채널 구축 등 - 관련기관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개념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제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③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협조체제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판단 - 국민·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적 및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 홍보를 통해 서비스 및 사업 이용 실적 및 만족도가 향상된 경우 충족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3-1. 성과지표 달성도 (35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난이도, 목표치의 적극성 설정 정도 및 달성도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지표별 획득 점수의 평균 점수

성과지표의 대표성(5)

• 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판단

① 상: 5점 / ② 중: 3점 / ③ 하: 1점

성과지표의 난이도(10)

• ㉠ 결과지표, ㉡ 부처 협업 필요성, ㉢ 현장 의견수렴 또는 방문형(현장형), ㉣ 다수의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활동 필요성 등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3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10점 / ② 3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8점 /

③ 2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6점 / ④ 2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4점 /

⑤ 1가지 이상 해당, 내용 충실: 2점 / ⑥ 1가지 이상 해당, 내용 미흡: 1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20)

적극성 \ 달성 여부	초과달성	달성	거의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높음	20	18	16	14	12
보통	18	16	14	12	10
낮음	16	14	12	10	0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제·개정: 초과달성, ②법률·시행령까지(법률만 목표인 경우 법률만) 제·개정: 달성, ③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 거의 달성

초과달성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초과하여 달성 (목표치 120% 이상)
달성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약간 초과 (목표치 100%~119% 달성)
거의달성	실적이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 경우 (목표치 90%~99% 달성)
일부달성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 (목표치 60%~89% 수준 달성)
미달성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지표 달성이 저조한 경우

• 3년간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전년도 실적의 110% 이상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목표치가 한계에 이르렀으나 핵심 기본업무에 관한 지표인 경우 실적 수준이나 추세를 유지하면 '보통' / 신규지표인 경우 '보통'(신규 지표라도 최근 3년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기존 지표와 동일하게 적극성 여부 평가)

* 실적이 증가 추세인 지표의 경우 목표치가 3년간 평균 실적의 120% 이상이라도, 전년도 실적 이하인 경우 '보통'

* 전년도 목표달성 실패한 과제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인정

• **가감점 항목(정성)** * 원점수와 가감점을 합한 점수는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의 질에 따라 ±1점 이내 가감 가능

- 성과지표 적극성이 인정되는 경우 1점 이내 가점 가능

- 성과지표 달성도가 200% 이상인 경우 -1점 이내 감점 가능

- 성과지표 특성상 초과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점 이내 가점 가능

* (예시) 하위법령 제때마련율('25년 목표치 100%)의 경우 달성 가능한 실적이 최대 100%로 초과달성 불가능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

(착안사항)

평가 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점)
측정 방법	○ 해당 과제의 추진으로 인해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국정 기초 및 전략목표 등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기여 정도(15) * 계량·비계량 효과 종합,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없는 경우는 공문, 보도자료, 공인 기관의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 ① 매우 뛰어남: 15점 / ② 뛰어남: 12점 / ③ 보통: 9점 / ④ 부진: 6점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추진 및 결과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10) •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 또는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부진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지적사항·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였는지 ㉣ 개선사항이 결과로 연결되었는지 ① ㉠, ㉡, ㉢, ㉣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10점 ② ㉠, ㉡, ㉢, ㉣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8점 ③ ㉠,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7점 ④ ㉠,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4점 * 전년도 평가 결과가 없는 신규 관리과제의 경우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및 상위목표 기여 정도(15)'를 25점 만점으로 환산
측정 기준 (확인사항)	○ 정책효과의 발생 수준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 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상위목표 달성 기여 여부 -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달성이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 등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 지적사항 반영 여부(㉠, ㉡) -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전년도 미흡과제 및 올해 상반기 부진과제 특별관리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정량 확인 ○ 수립된 시행계획 등 준수 여부 및 개선사항 결과 연결 여부(㉢, ㉣)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 및 매월 실시하는 점검 결과 확인
평가 근거	○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효과 발생 관련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 언론 보도자료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관련 자료

평가지표		4-1.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4점)																																																									
측정 방법		○ 국정과제, 특정평가 대상 역점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등 주요 정부시책에 대한 기여도를 정성평가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가점 4점)																																																									
		<table><tr><th>구분</th><th>주요 정부시책</th></tr><tr><td>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 국정원칙</td><td>국정과제, 역점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 등</td></tr></table>		구분	주요 정부시책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 국정원칙	국정과제, 역점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 등																																																				
구분	주요 정부시책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 국정원칙	국정과제, 역점정책과제, 정부혁신 추진과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 등																																																										
		* 주요 정부시책과 관련이 있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 4점 이내 가점 부여																																																									
측정 기준 (착안 사항)		<참고> 2025년 법제처 정부혁신 추진과제																																																									
		<table><tr><th>세부과제명</th><th>소관부서</th></tr><tr><td colspan="2">소통과 협력</td></tr><tr><td colspan="2">1. 대국민 소통 및 현장 의견수렴 강화</td></tr><tr><td>1.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td><td>법령정비과</td></tr><tr><td>2. 현장 중심의 법령해석 제도 운영</td><td>법령해석총괄과</td></tr><tr><td colspan="2">2.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 활성화</td></tr><tr><td>1. 과기부 협업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td><td>미래법제혁신기획단</td></tr><tr><td>2. 과기부 협업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지원</td><td>미래법제혁신기획단</td></tr><tr><td colspan="2">서비스 향상</td></tr><tr><td colspan="2">3.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td></tr><tr><td>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 사례 발굴</td><td>법령데이터혁신팀</td></tr><tr><td>2.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td><td>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td></tr><tr><td>3. 정책 현장 맞춤형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비</td><td>법령용어순화팀</td></tr><tr><td colspan="2">4. 행정 사각지대 해소</td></tr><tr><td>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td><td>법령데이터혁신팀</td></tr><tr><td>2.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제공</td><td>법제정보담당관실</td></tr><tr><td>3. 외국인 국내체류·투자 지원을 위한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추진</td><td>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td></tr><tr><td colspan="2">5.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td></tr><tr><td>1.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td><td>법령데이터혁신팀</td></tr><tr><td>2.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속한 생활법령 정보 제공</td><td>법제정보담당관실</td></tr><tr><td>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td><td>법령용어순화팀</td></tr><tr><td colspan="2">업무 효율화</td></tr><tr><td colspan="2">6. 내부 행정 프로세스 개선</td></tr><tr><td>1. 처내 지식공유 플랫폼(창의지식광장) 개편</td><td>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td></tr><tr><td colspan="2">7.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td></tr><tr><td>1.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td><td>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td></tr><tr><td colspan="2">8.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td></tr><tr><td>1. 신기술 적극 활용 위한 AI 등 디지털 교육 강화</td><td>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td></tr></table>		세부과제명	소관부서	소통과 협력		1. 대국민 소통 및 현장 의견수렴 강화		1.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	법령정비과	2. 현장 중심의 법령해석 제도 운영	법령해석총괄과	2.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 활성화		1. 과기부 협업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미래법제혁신기획단	2. 과기부 협업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지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서비스 향상		3.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 사례 발굴	법령데이터혁신팀	2.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3. 정책 현장 맞춤형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비	법령용어순화팀	4. 행정 사각지대 해소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법령데이터혁신팀	2.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3. 외국인 국내체류·투자 지원을 위한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추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5.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1.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법령데이터혁신팀	2.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속한 생활법령 정보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법령용어순화팀	업무 효율화		6. 내부 행정 프로세스 개선		1. 처내 지식공유 플랫폼(창의지식광장) 개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7.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1.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8.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1. 신기술 적극 활용 위한 AI 등 디지털 교육 강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세부과제명	소관부서																																																								
		소통과 협력																																																									
		1. 대국민 소통 및 현장 의견수렴 강화																																																									
		1.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	법령정비과																																																								
		2. 현장 중심의 법령해석 제도 운영	법령해석총괄과																																																								
		2.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 활성화																																																									
		1. 과기부 협업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미래법제혁신기획단																																																								
		2. 과기부 협업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지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서비스 향상																																																									
		3.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 사례 발굴	법령데이터혁신팀																																																								
		2.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3. 정책 현장 맞춤형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비	법령용어순화팀																																																								
4. 행정 사각지대 해소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법령데이터혁신팀																																																										
2.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3. 외국인 국내체류·투자 지원을 위한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 추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5.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1.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법령데이터혁신팀																																																										
2.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속한 생활법령 정보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법령용어순화팀																																																										
업무 효율화																																																											
6. 내부 행정 프로세스 개선																																																											
1. 처내 지식공유 플랫폼(창의지식광장) 개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7.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1.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8.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1. 신기술 적극 활용 위한 AI 등 디지털 교육 강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평가 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4-2. 핵심과제 추진성과 (+1점)						
측정방법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의결 시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한 성과 핵심과제 추진성과(가점 1점) • 핵심과제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효과성, 중요도·난이도 등을 계량적·비계량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평가 시 고려사항] <table data-bbox="371 712 1375 1171"> <tr> <td>계량적 성과</td><td>• 핵심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r> <td>비계량적 성과</td><td>•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r> <td>부수적 효과</td><td>•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td></tr> </table> ※ 위 항목별 별도 배점 없음. 부서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성과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점수 부여	계량적 성과	• 핵심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비계량적 성과	•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부수적 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계량적 성과	• 핵심과제의 정책목표, 국제공인지표 및 그 외 과제를 대표하는 통계·수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를 과거추세, 국제수준 및 대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비계량적 성과	• 통계·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 국민 편익 증진·정책의 질 개선, 국민 불편 해소 등 비계량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정성평가						
부수적 효과	•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ex. 국격제고, 추가 수출판로 확대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기존의 행정·정책 경험을 뛰어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 해결에 접근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평가 ○ 효과성 - 실질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정도를 평가 ○ 중요도·난이도 - 과제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준비하였는지 평가 -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비하여 핵심과제를 얼마나 도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였는지 평가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4-3. 다부처 협업 노력 (+1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착안사항)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 부처간 협업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부처간 협업 과제 부문 추진성과 다부처 협업과제 추진성과(가점 1점) * 협업과제: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자원 절감, 갈등 해소,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측정 가능한 과제 * 단순히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과제가 있어야 인정 [평가 시 고려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협업 난이도</td><td> • 관계 부처 갈등 여부 및 갈등 지속기간 • 상시적·관계적 협조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 정책 개선이 있는 과제인지 여부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업 성과</td><td> •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법령 개정 등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 • 언론보도, 국민만족도 등 국민체감 효과 </td></tr> </table> ※ 위 항목별 별도 배점 없음. 부서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과제의 성과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점수 부여	협업 난이도	• 관계 부처 갈등 여부 및 갈등 지속기간 • 상시적·관계적 협조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 정책 개선이 있는 과제인지 여부	협업 성과	•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법령 개정 등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 • 언론보도, 국민만족도 등 국민체감 효과
협업 난이도	• 관계 부처 갈등 여부 및 갈등 지속기간 • 상시적·관계적 협조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 정책 개선이 있는 과제인지 여부				
협업 성과	•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법령 개정 등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 • 언론보도, 국민만족도 등 국민체감 효과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				

평가지표	4-4. 자료제출 지연 감점 (△0.1/일, 최대 △1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착안사항)	○ 불필요한 평가 지연 방지 및 부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평가 시 평가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시 △0.1/일, 최대 △1점 감점 부여 * 자료제출 여부는 내부 메일, 공문 등 그 제출일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
평가근거	부서 제출자료